

「평창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 안 자 : 남진삼 의원
- 제안일자 : 2025. 4. 29.
- 회부일자 : 2025. 6. 9.
- 상정일자 : 2024. 6. 10.

2.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에 따라,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의회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조문을 마련하고, 조례 전반에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표창의 종류에 모범공무원 포상에 대해 규정(안 제5조)
- 모범공무원 포상 조문 신설(안 제7조의 2)
- 자구 수정 및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 정리(안 제5조 ~ 안 제12조)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입법의 취지

- 직무에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의회 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직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여 법적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안 제5조(종류)에서 현행에 맞지 않는 ‘그 밖에 기념패’를 삭제하고 ‘모범공무원 포상’을 신설함.
- 안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에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창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르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
- 안 제6조, 제7조, 제9조에서 수여 및 심사 대상을 ‘사람’에서 ‘경우’로 수정하여 기관·단체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그 외 현행에 맞지 않는 조문 표현을 정비 또는 삭제하였음.

5. 종합검토의견

- 상위법령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표창을 조례에 위임하였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는 타당하고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행한다.